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1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12일 (윤달 5월 19일) 수요일

##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토지수용' 무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11일 사업인가와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소송 이후 공사가 중단된 메타프로방스 내부 모습.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대법원이 이 사업의 시행계획 인가 취소와 토지수용재결 집행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8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기간 중 사업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11일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수와 전남도도

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사업 실시계획 인가 효력 취소와 토지수용재결 집행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담양군 등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 사안의 주요 쟁점은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위반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그 지정처분 하자를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와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기간 내 부지 매각 및 제3자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이 허용되는지였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이 사인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대법원, 담양군 등 상고 기각...사업 다시 원점으로

“사업대상 토지 3자 매각 자금 조달...법상 허용 안돼”

요건으로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둔 취지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일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계획법령은 소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중 소유 요건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은 민법상 소유권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참가인의 신청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에서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기간 중에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제3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사실상 토지를 개발·보완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하게 된다"고 밝혔다.

단 "실시계획 인가처분 당시까지 사업시행기간 내 사업부지 일부를 제3자에 매각하고 이를 통해 시설의 일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제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토계획법이 명시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분 시기에 관해서도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다.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본 원심(항소심) 판단은 잘못이지만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 만큼 결과적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선행처분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인 만큼 이에 터잡은 실시계획 인가처분과 토지수용재결까지도 모두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말 완공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21만3000㎡에 메타프로방스 전통 놀이마당 유휴지를 조성해왔다.

메타길·기후변화체험관·개구리생태공원이 포함된 1단계(12만7000㎡)와 메타숲광장·체험학습장·카페테리아·특산물판매장이 들어설 3단계(5만㎡)는 담양군이 추진 중이며, 상가 59개동을 비롯해 펜션 34개동, 관광·가족호텔 2개 동 등이 포함된 2단계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13만4000㎡·총사업비 587억원)은 디자인프로방스와 2개 민간기업이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공정률은 1단계는 85%, 3단계는 100%인데 비해 문제가 된 2단계는 70%에 그치고 있다. 상가와 음식점·펜션은 모두 완료됐지만 지하 1층·지상 4층 78실 규모의 관광호텔만 터파기 상태에서 1년 이상 멈춰 서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Photo漫評

설상가상

국인의당 이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막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민주노동당 사회적 총파업의 일환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파업 첫날인 6월 29일 아침,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인주 의원은 이 문제를 언급했다. 다음날 SBS 기자가 의원에 전화해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자세한 견해를 물었고 이 의원은 통화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상세히 설명한 뒤, 이번엔 파업 노동자들을 '미친 놈들'이라고 표현했다. 급식 조리종사원에 대해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급식소에서 밥 하는 아줌마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표창원 의원은 9일 이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공개비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재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이인주

밥하는 아줌마들 아무 것도 아니다



표창원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박지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네

## 광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초등학교' 최다

광주시교육청, 초등생 폭력에 대한 인식 향상돼 응답률 높아

광주지역 학교 중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초·중·고 학생 14만327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실시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931명(0.7%)으로 전년도 1175명(0.8%)보다 0.1%포인트가 감소했다.

전국 학생 피해 응답률 0.9% 대비 광주시교육청은 0.2%포인트가 낮았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자는 초등학교 622명(1.5%), 중학교 190명(0.4%), 고등학교 118명(0.2%), 기타 1명(0.1%)으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자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되는 데다 폭력에 대한 인식이 향상돼 상급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피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전국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주는 전년 대비 0.3%포인트가 감소했다.

유형별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670건(33.7%),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356건(17.9%), 신체폭행 260건(13.1%) 순으로 조사됐다. 또 스토킹 223건(11.1%), 사이버 혹은 휴대전화를 통한 괴롭힘 192건(9.6%), 금품갈취 131건(6.8%), 강제적인 심부름 81건(4.1%), 강제추행 및 성추행 78건(3.9%)이 뒤를 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인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아제는 평창입니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